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독도의 날 지정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0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독도의 날 지정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음.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동조라도 하듯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공공기관의 독도영상물을 송출을 중단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이는 뉴라이트·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일본과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에 반영돼 고의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독도의 날 지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날에 각종 문화·예술 등 독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독도의 날) ①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 독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독도의 날 관련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는 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각종 문화·

예술·학술행사 등 독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북도 및 울릉군 조례로 각각 ‘독도의 달’, ‘울릉군 독도의 날’을 제정·기념하고 있고, 일본도 시마네현 조례로 매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기념하고 있음.

[한·일 독도 관련 기념일 현황]

- (일본) 시마네현「조례」로 ‘다케시마의 날’(매년 2.22) 제정(‘05.2.22)
- (한국) 경상북도「조례」로 ‘독도의 달’(매년 10월) 제정(‘05.7.4),
울릉군 「조례」로 ‘울릉군 독도의 날(10월 25일)’ 제정(‘24.5.7)

□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기관명	검 토 의 견
국무조정실	○ 독도는 ‘독도의 날’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에도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국가기념일 지정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와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외교부	○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 ‘독도의 날’에 대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필요 ○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도 면밀 검토 필요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²⁾ 참고
경상북도	○ 현재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은 ‘독도 칙령의 날’로 기념하면 충분하며, 일본이 1905년 발표한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에게서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된 19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독도와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과 5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고종 황제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 ○ 경북도에서 제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기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교육청	○ 국가 차원에서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함. ○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기보다 지방단체나 시민단체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꾸준히 체득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 참고로, 21대 5건의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제·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음.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419